

#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12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7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17년 10월 24일

## 2. 제안이유

- 민간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는 인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체계화·전문성을 확보하고,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인권은 비교적 최근에 행정에 도입된 분야로서, 그 동안 담당 공무원에 의해 용역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인권교육의 경우 전문성 부족, 경험 축적 단절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원활한 인권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이에, 인권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인권 교육과 시민사회 지원·협력사업 사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실시 결과(서울시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서울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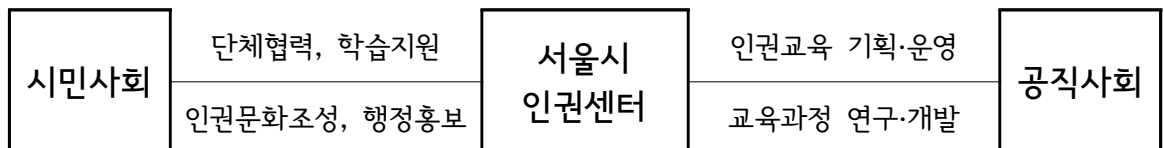
-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 전문성 활용한 서울시 인권교육 체계화
- 민간주체를 매개로 하여 인권행정 추진에 시민사회와의 협치 활성화

다. 위탁사무 내용

#### 1) 센터 역할

-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중상시 운영함.
-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인권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인권단체 지원·협력 등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행정 홍보 역할을 통해 서울시 인권 협치를 강화함.

#### 2) 센터 기능



### 3) 주요 위탁사무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통합/일반 과정 기획 및 운영
  - 통합과정(4시간, 총15회) : 본청 11개 실·국 및 1개 사업소 1,797명 대상
  - 일반과정(2시간, 총190회) : 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22,383명 대상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개발
  -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활용
  - 강의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제작, 활용 및 배포
- 인권교육 강사진 관리
  - 양질의 강사 명단 관리 및 교육과정 투입
  - 기관 자체교육 강사 추천 요청 시 연계 활용
- 인권 관련 자료 수집, 보존, 연구 등
  - 교재·과정 연구, 시민 학습 지원 등을 위한 인권 자료 아카이브 구축

#### 〈시민사회 지원·협력 사업 운영〉

- 지역사회 인권단체 지원 및 협력
  -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등 협치와 소통을 위한 창구 운영
  - 회의·교육장소 유희공간 대관
- 시민 학습 지원
  - 시민 대상 인권 강좌 프로그램 개설·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권 자료 제공 (다운로드, 열람 등)
- 시민사회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행정 홍보
  - 대시민 권리 인식 캠페인 등 기획 및 실시
  - 시민 참여형 인권문화행사 개최
-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방문·전화 시 간이상담 후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안내
  - 서울시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절차 안내
  - 필요시 인권무료법률 상담 연계

#### 라. 위탁시설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3층(후보지)
- 2) 규모 : 전용면적 기준 264㎡ 내외 (사무공간 99㎡, 교육공간 165㎡)

### 3) 공간배치

- 시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확보하여 우선 교육 관련 핵심기능(사무공간, 교육공간) 위주로 구성
- 인권교육 과정 위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추후 인권단체 활동 공간, 전시공간 등을 포함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 확대
- 장기적으로는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서울시 내부 조직과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민-관 통합형 인권센터 설치방안 검토

### 4)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18. 5. ~ '21. 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인권, 인권교육 분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864,150천원(2018년)

- 산출근거

구분	금액	내역	비고
총계	864,150천원		
인건비	160,000천원	- 기본급, 제수당 및 퇴직충당금	
운영비	361,900천원	-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 사무용품, 집기류, 기타소모품 등	
사업비	342,250천원	- 서울 인권아카데미 · 통합과정 : 64,000천원 · 일반과정 : 187,250천원 - 교육콘텐츠 개발 : 50,000천원 - 시민사회 지원협력 : 41,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 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5. 검토의견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협력을 강화하고자 인권센터를 조성하여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현황			
시설명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소재지	후보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3층 ※ 후보지 임차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의 유사면적 사무공간 임대		
시설규모	264㎡ 내외 (전용면적 기준)		
시설용도	사무공간(99㎡) 및 교육공간(165㎡)		
준공일자	-	개관일자	2018. 5월 (예정)
이용대상	시민, 단체, 공무원	수용인원	80명 이상
위치			



○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2018. 5. ~ 2021. 4.)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모집대상 : 인권, 인권교육 분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사업비: 864,150천원(2018년)		
구분	금액	내역	비고
총계	864,150천원		
인건비	160,000천원	- 기본급, 제수당 및 퇴직충당금	
운영비	361,900천원	-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 사무용품, 집기류, 기타소모품 등	
사업비	342,250천원	- 서울 인권아카데미 · 통합과정 : 64,000천원 · 일반과정 : 187,250천원 - 교육콘텐츠 개발 : 50,000천원 - 시민사회 지원협력 : 41,000천원	



○ 위·수탁 사무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통합/일반 과정 기획 및 운영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개발
- 인권교육 강사진 관리
- 인권 관련 자료 수집, 보존, 연구 등

〈시민사회 지원·협력 사업 운영〉

- 지역사회 인권단체 지원 및 협력
- 시민 학습 지원
- 시민사회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행정 홍보
-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교육이 민간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2013년 이래 매년 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교육 과정 운영과 교재 개발 등 인권교육의 핵심 부분을 민간주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인권단체 지원·협력 업무 등 행정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인권 행정 추진시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서울시 인권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센터 구성 및 인권교육전담기능 구현 방안이 제시되었고,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 제11조(인권센터) : '12. 9월
  - 현재 별도 인권센터 설치 없이 인권담당관이 기능 수행 중
- 남산제2청사(옛 안기부 6국) 활용한 인권센터 조성 추진 : '15. 4월
  - 현 인권담당관의 남산제2청사 이전을 전제로 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 '15. 11월
  - 지속적 인권교육 성장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센터 설립 제안
- “남산 여장지락 재생사업” 사업변경으로 인권센터 설치 무산 : '16. 4월
  - 남산제2청사 인권센터로 활용 → 철거로 변경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 : '16. 8월
  - 인권교육센터 구성, 인권교육전담기능 구현 등 제시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 제11조 2항 신설 : '16. 9월
  - 인권센터 업무 위탁 근거조항 신설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개선방안 자문 : '17. 7월
  - 인권센터 설치 후 인권교육, 단체지원 업무 등 위탁 운영 의견 제시

-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교육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조직 확대 및 추가채용 없이 수탁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인권 분야 전문성과 교육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센터는 일종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의 가교 및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추진 근거, 추진 방법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11조제1항에서 인권센터는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주된 위탁사무로 추진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인권센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며, 제11조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조항을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추진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인권교육 사무를 위탁할 “인권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2015년)에 따르면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 교육센터 설치시 조례상 근거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둘째, 서울시에는 이미 서울노동권익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NPO 지원센터 등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이 있는바, 이에 따른 업무 중복 등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동종(유사)시설 비교표〉

시설명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가칭)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담당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담당관
위탁형태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시설형 위탁
수탁기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정
개소일	2015. 2. 24.	2014. 2. 13.	2018. 5월 (예정)
시설규모	약 529㎡(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약 81㎡	약 264㎡
인력·조직 구성	18명	9명	5명
위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 노동관계 전문상담체계 구축</li> <li>-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및 실태조사 등</li> <li>-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li> <li>- 기타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평가 및 사업지원 등</li> <li>- 전태일 기념공간 등 교육, 전시 포함한 복합시설 조성 추진 중 ('18.3월 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인권침해관련 조사 및 구제사업</li> <li>-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업</li> <li>- 장애인 인권차별의 상담, 사례관리 등</li> <li>- 상담실 확보하고, 인력, 예산 확충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전환 추진 중 ('18.1월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인권교육 통합/일반 과정 기획 및 운영</li> <li>-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개발</li> <li>- 인권교육 강사진 관리</li> <li>- 인권 관련 자료 수집, 보존, 연구 등</li> <li>〈시민사회 지원·협력 사업 운영〉</li> <li>- 지역사회 인권단체 지원 및 협력</li> <li>- 시민 학습 지원</li> <li>- 시민사회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행정 홍보</li> <li>- 인권침해 상담, 지원 등</li> </ul>
소요예산	2,563백만원(2017년)	602백만원(2017년)	864백만원(2018년)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주요기능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수탁기관 : (사)흥사단(위탁유형 : 사무위탁, 예산지원형)
  - 센터위치 :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수탁기관 마련)
  - 인력 : 5명
- 위탁기간 : '17.4.3.~'19.4.2(2년)
- 2017년 예산 : 592백만원(민간위탁금)

〈서울시 NPO지원센터〉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주요기능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상담 등 역량강화
  - 시민사회단체 사업 지원
  - 시민사회 아카이브구축 및 정보제공
  - 활동공간 지원 등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등
- 2017년 예산 : 2,381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시민(대표:정현백)
  - 센터위치 :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내 지상 1, 2층
  - 인력구성 : 2실 4팀 14명(센터장1, 실장2, 팀장4, 직원7)
  - 규모 : 867.4㎡
    - 1층(열린공간) : 대강당, 카페, 홍보 전시공간 등
    - 2층(회원,사무공간) : 협업공간, 회의장, 사무실, 교육장 등

- 셋째,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2억원에 달하는 바, 위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제4차 서울시 인권위원회 교육협력 소위원회(2017년 7월)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개선방안으로 “계약절차 개선,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 등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공동연수시(2017년 7월)에는 인권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인권’이 서울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 나가야 함을 지적한바 있음.

- 또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인권교육 내용의 편향성 우려” 등을 지적한바 있음.
- 따라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을 통한 업무 수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 의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된바, 이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